

캐나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연구

김 성 순*

Ⅰ 요약

캐나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그 것과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① 캐나다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연방제도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제도는 지역간 형평화 제고 및 재정자립의 제고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② 재정균등화제도를 통한 지역간 수평적 형평성의 유지는 연방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연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중에 하나이며, 이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주도하에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제도가 자주 변하는 한국과 다르다. ③ 형평화교부금은 평균적인 표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고 기본적으로 1인당 표준세입을 균등화하도록 재정능력으로 고려하여 균등화되도록 미달되는 지방정부에 보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 보통교부세와 동일한 기능을 하나 배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 지원 성격을 갖는 이 보조금이 다른 보조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총 이전보조금의 80% 가까이에 달하고 있다. 보건, 사회분야 복지보조금이 아직 작고 형평화보조금도 배분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우리나라의 보조금과 다르다. ④ 조건부 교부금을 장기 지원 계획(long-term funding support)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그 지원 체계의 역할과 재정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조건부 교부금이 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투명하게 지원하고 재정 책임성도 명확히 하는 점도 한국이 본 받아야 할 점이다.

핵심주제어 : 캐나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교부금

*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sskim@dankook.ac.kr

I. 서 론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대와 재정수요의 증대로 지난 수십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 또한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힘입어 중앙재정에 비해 지방재정규모도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간 자원배분 문제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지방재정에 있어서 세출분권(교육재정 제외시 40%)은 신장되었으나, 세입분권(21%)은 취약하여 지방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이 이전재원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및 효율성 측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문제점은 ① 국세위주 조세구조로 이전재원이 지방재정에서 과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② 대표적인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인 부동산보유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편익과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 ③ 제도적으로 보장된 과세자주권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이전재원은 지방재정의 확충,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의 완화, 국가정책의 실현 등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자원배분에 대한 제도설계 및 운영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다양하게 세분화된 제도간에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복잡하여 정체성이 모호하며 기능수행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한 자원배분제도에 관한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된 자원배분 제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선진국들중 캐나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진국들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분석한 기존연구들이 많으나 그 연구대상은 주로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관한 연구들이어서, 본 연구는 최근 재정개혁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캐나다를 그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지방재정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 등을 시정하고,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국가와 지방의 상호이해관계를 갖는 정책,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수준(national minimum)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주고 지역간의 누출효과(spillover effect)를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 이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에 고루 분포된 세원을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을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원불균형을 조정하고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보장하고,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고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재난 등의 특별대책에 따른 보조를 하기 위한 기능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 캐나다의 자원배분 및 재정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제III장에서 정부간 및 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제도를 검토하며, 제IV장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제V장에서 결론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캐나다의 자원배분 및 재정지원 체계

캐나다 연방제는 연방정부, 10개 주(Province) 및 3개 준주(Territories)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주는 Ontario, Quebec, Nova Scotia, New Brunswick, Manitoba, British Columbia, Alberta, Prince Edward Island, Saskatchewan, Newfoundland and Labrador이며, 3개 준주는 Northwest Territories, Yukon Territories, Nuavut Territories이다. 준주는 헌법상의 주정부적 지위를 갖지 못하며 연방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준주는 세입의 상당부분을 연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주정부와 상이하다.

캐나다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캐나다 연방재정주의의 주요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세입과 세출 정책에 있어서 연방 중앙정부와 독립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주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업무에 대한 연방정부의 법적인 제약은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가적 화합과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부관료들은 재정 및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주정부의 재정담당자와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이전재정의 형평화기능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1993년에는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시도하였다. 재정자립 수준이 57%에 불과한 문제를 재정조정제도로 시정하려는 시도이다(서정섭(2003)). 지방재정에서 보조금 비중은 24%에 달하지만 주로 보건 및 교육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현재, 캐나다의 정부간 재원이전은 4가지 주요 이전 프로그램으로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4대 재정조정제도는 조건부교부금에 해당하는 캐나다보건재정 이전(Canada Health Transfer : CHT), 캐나다 사회재정이전(Canada Social Transfer : CST), 무조건적교부금인 형평화교부금(Equalization), 準州교부금(Territory Formula Financing : TFF)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 최근 새로이 도입된 역외 협정 상쇄보조금(Offshore Accord offsets), 신 노동시장 훈련기금, Infrastructure 지원금, 청정 환경 변화를 위한 생태 트러스트(ecoTrust for Clean Air and Climate Change)를 들 수 있다.

연방정부의 이전지출은 현금이전(cash transfer)과 조세이전(tax transfer)으로 구분되며, 그 구성비는 대략 전체 이전지출의 3분의 2가량이 현금이전이고 조세이전의 비중은 3분의 1 정도이다. CHT와 CST는 각각 운영되어 오던 캐나다지원계획(Canada Assistance Plan : 보건, 교육과 같이 특정 용도를 위한 연방정부의 조건부 대응보조금)과 Established Programs Financing(EPF :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조건부 대응보조금)을 1996년에 통합한 특정보조금으로 점차 주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block grant)을 지향하고 있다. 이외 다양한 정부사업에 따른 재정지원, 일종의 특정보조금과 퀘백주를 위한 특별한 재정지원 등이 있다(서정섭(2003)). 최근 연방정부는 재정이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전의 캐나다보건 사회재정이전(CHST)을 사회재정이전(CST)과 보건재정이전(CHT)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008-09년도 연방정부의 재정이전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8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중 현금이 500억 달러, 조세가 224억 달러를 점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이전의 80% 가까이가 사회복지를 위한 CHT 및 CST로 지원되고 있다.

<표 1> 연방정부의 재정이전(2005-2008)

(단위 : 백만달러)

	2005-06	2006-07	2007-08	2008-09
캐나다 보건·사회재정이전(CHST)	48,030	49,069	52,688	55,561
현금(cash)	28,725	28,640	31,065	33,195
조세(tax)	19,305	20,429	21,623	22,366
보건재정이전(CHT)	32,279	32,806	34,881	36,497
사회재정이전(CST)	15,751	16,263	17,807	19,065
형평화교부금(Equalization)	10,907	11,535	12,925	13,620
역외보조금(Offshore Accords)	219	386	563	848
準州교부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2,058	2,118	2,279	2,313
합 계	59,847	61,740	66,870	70,827

주 : CHST=CHT+CST. 조세이전과 연계되어 있는 형평화교부금은 CHST와 형평화교부금 각각에 포함되어 있다. 합계에서는 이중 계상을 피하기 위해 조정한 것이다.

자료 : [http://www.fin.gc.ca/fedprov/\(Transfer payment to Provinces\)](http://www.fin.gc.ca/fedprov/(Transfer payment to Provinces))

2008~09년도 형평화교부금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리티시 콜럼비아와 사스카체완이 새로이 지원을 받지 못해 이제 6개의 주정부만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다. 같은 성격의 準州교부금은 3개의 準州에 지원되었으며 특정보조금의 성격을 지니는 CHT 및 CST는 모든 주와 準州에 지원되었다. 형평화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주는 퀘벡주이며 특정보조금인 CHT와 CST가 가장 많이 지원된 주는 온타리오 주이다.

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정교부금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일반교부금은 재정균등화, 법정 보조금, 재산세대체 교부금, 準州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하위정부에 대해 다양한 특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조건부 교부금은 특정사업에 지출하거나 지방정부가 일정비율의 비용부담을 진다는 조건하에 교부되고 있다(서정섭(2003)).

<표 2> 연방정부의 재정이전(2008-09)

(단위 : 백만달러)

	합계	CHST			형평화교부금	준주교부금
		계	현금	조세		
Newfoundland and Labrador	1,625	836	519	317	158	-
Prince Edward Island	517	230	143	87	322	-
Nova Scotia	2,964	1,548	961	587	1,465	-
New Brunswick	2,659	1,242	771	471	1,584	-
Quebec	19,972	12,800	7,945	4,855	8,028	-
Ontario	21,760	21,760	12,678	9,082	-	-
Manitoba	3,843	1,972	1,224	748	2,063	-
Saskatchewan	1,610	1,610	1,146	463	0	-
Alberta	6,148	6,148	3,033	3,115	-	-
British Columbia	7,237	7,237	4,672	2,565	0	-
Northwest Territories	882	77	34	43	-	805
Nunavut	994	50	36	14	-	944
Yukon	615	61	33	28	-	564

자료 : [http://www.fin.gc.ca/fedprov/\(Transfer payment to Provinces\)](http://www.fin.gc.ca/fedprov/(Transfer payment to Provinces))

Ⅲ. 정부 및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

1. 정부간 재정조정

(1) 일반교부금

1) 재정균등화제도(Equalization Program)

재정균등화제도는 캐나다 연방이 성립될 당시부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시행은 1957년에 시작되었다. 1982년에 공포된 캐나다 연방 헌법에 재정균등화를 연방의 의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방은 각 지역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입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무조건부 교부금을 통하여 재원이전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이전재원은 주정부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지출 활동을 하고 연방정부는 이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재정균등화를 위한 기본공식은 대표적 5개 주의 1인당 세입을 기준으로 하여 왔으나 2007년부터 새로이 강화된 균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모든 10개 주의 1인당 평균세입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2008/09년도에 6개주에 136억 달러 상당의 균등화 재정이전이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지역간 수평적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195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빈곤 지역과 부유한 지역간 기본서비스 차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연방정부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¹⁾. 연방헌법 제36조 2항에 의하면 ‘캐나다의 의회와 정부는 지방정부들이 합리적인 비교할만한 조세수준으로 합리적인 필적할만한 공공서비스 수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세수를 보장하도록 균등화 원칙에 가입하여야 한다.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are committed to the principle of making equalization payments to ensure that provincial governments have sufficient revenues to provide reasonably comparable levels of public services at reasonably comparable levels of taxation.*)’ (*Subsection 36(2) of the Constitution Act, 1982*)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균등화 교부금은 개념적으로 ‘평균적인 표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으며 배분공식은 기본적으로 과세능력(tax capacity)에 토대를 둔다. 과세능력은 개별 과표에 대한 전국 평균 세율을 적용하여 얻어진 1인당 세입으로 산출한다. 1인당 과세능력이 표준치에 비하여 낮은

1)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것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www.fin.gc.ca/FEDPROV/eqpe.html을 참조 바람.

지역은 그 차이가 재정균등화교부금에 반영된다. 이때 과세능력의 표준치는 모든 10개 주의 평균치이다. 다시 말해서 전국 평균치에 미달한 지역만이 교부대상이다. 반면, CHT 및 CST는 조건부 대응보조금인 관계로 전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다²⁾.

그 균등화교부금의 산출 및 배분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1인당 과세능력 산출공식은 $E_{ij} = t_j(\frac{B_{sj}}{P_s} - \frac{B_{ij}}{P_i})P_i$ 이다.

- 여기서, 각 기호는

- E_{ij} : i지역내 세원 j의 세수입
- B_{sj} : 세입원 j에 대한 표준과표(10개 주 평균치)
- P_s : 10개 주의 인구
- B_{ij} : 세원 j에 대한 i주의 과표

· $t_j = \frac{\sum_i TR_{ij}}{\sum_j B_{ij}}$: 세원 j에 대한 전국 표준세율

- TR_{ij} : i지역 j세원의 1인당 실제 세입

단, 표준세율은 10개 주의 총 세수입을 총 과표로 나눈 것에 해당한다.

상기 식에 따라 개별 세원의 세수입을 합산하면 전체 세원에 대한 i지역의 총 세수입이 도출된다. 이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표준세율에 i지역의 과표를 곱한 값이 i지역의 재정동원능력(fiscal capacity)으로 정의하며, 개별 지역의 재정동원능력과 전국 평균치와의 갭을 반영하여 교부액을 결정한다.

$$TE_i = \sum_j E_{ij}$$

i지역 재정동원능력 = i지역 과표 × 표준세율

교부액 = (TR_i 전국 1인당 표준세입) × i지역 인구

2) 상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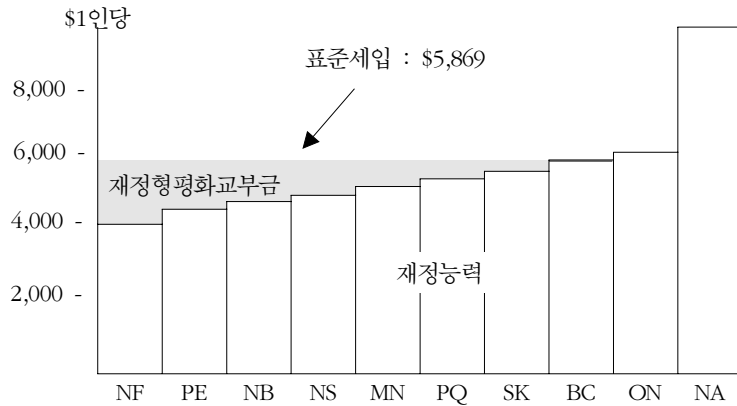
3) The World Bank,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in Nine Countries, 1997. pp.6-7, 서정섭 (2003)에서 재인용.

현재 교부대상 세원인 j는 30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가솔린세, 자동차면허세, 주류세, 삼립세, 천연가스세, 가스 및 토지관련 세원, 광물 및 비광물관련 세원 등 국세에 기타 주정부세, 지방세를 합산하여 시산한다.

다음 <그림 1>에서 보듯이 전국 평균세율로 환산하여, 1인당 표준세입을 기준으로 여기에 미달한 7개 주가 실제치와 표준치의 차이만큼 교부단체의 교부액이 되는 것이다. 2007~08년도에 재정형평화교부금으로 연방정부에서는 전년보다 15억 달러 증가한 127억 달러를 교부하였다.

2007~08년도 예산부터 O'Brien 보고서에 의한 새로운 균등화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방식의 핵심은 10개주 세입 평균에 천연자원 수입(natural resource revenues)에 대해 50% 율을 제외한 10개주 평균 세입과 재정능력(fiscal capacity)의 차로 하여 이전보다 균등화 표준(Equalization standard)을 보다 강화하고, 천연자원의 개발에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며, 자원의 가격과 생산량이 미래에 감소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균등화 교부금 산정시 재생불가능한 자원(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을 완전히 제외함으로써, 이로 인해 주정부로의 지불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림 1> 재정형평화교부금 산정도



자료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07)에서 재인용.

2007~8년도 현재 10개 주 가운데 Prince Edward Island, New Brunswick, Manitoba, Nova Scotia, Newfoundland and Labrador, Quebec 6개 주가 재정형평화 교부금을 연방정부로부터 교부 받고 있으며, 1인당 교부금 액수로는 이 중 Prince Edward Island 주가 가

장 크고, Quebec 주는 형평화교부금 총액은 가장 크나 1인당 교부금 액수로는 가장 작다.

2) 연계 형평화 보조금(Associated Equalization)⁴⁾

연방정부는 1977년 기준연방세(Basic Federal Tax, BFT)의 13.5%와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CIT)의 1%를 보건 및 고등 교육(health and post-secondary education)을 위해 주정부에 교부하기로 주정부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조세이전(tax point transfer)이 몇몇 주에서는 효과가 있어 조세이전 형평화에 합의하였다. 이는 또한 보건 및 고등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매년 조세이전을 통해 형평화교부금이 계산되어 이전되는데 이를 Associated Equalization라 부르며 2008~09년도의 조세이전 형평화교부금은 대략 15억 달러에 이른다.

Associated Equalization 재정이전은 보건, 고등교육,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재정이전이기에 때문에 CHT 및 CST로 고려되기도 한다. 2008~09년도 CHT와 CST는 224억 달러이며 이 중 15억 달러는 Associated Equalization이다.

또한 이는 형평화교부금제도(Equalization System)를 통하여 계산되고 이전되기 때문에 형평화교부금(Equalization Program)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2008~09년도 형평화교부금 136억 달러이며 이 중 15억 달러는 Associated Equalization이다. 총 이전재원은 Associated Equalization가 CHT·CST와 형평화교부금 양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여 구한다.

다음 조세이전(tax transfer)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1977년 연방과 주간 합의에 의해 개인소득세 13.5%, 법인소득세 1%를 주정부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연방정부 세율을 낮추고 동시에 그만큼 주정부의 세율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조세이전이라 한다. 양 정부의 세율이 변화하였지만 서로 상쇄되어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결과 연방정부로 가야할 세입이 대신에 주정부로 들어가 연방과 주예산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매년 연방정부에게는 既定수입이 되고 주정부는 부가적인 수입이 되는 셈이다. 또한 이는 주정부가 주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주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이러한 조세이전은 주에 상당한 자원증대를 가져다 주었으며 2008~09년도 주정부가 받은 총 CHT와 CST는 556억 달러인데 그 중 224억 달러가 조세이전, 332억 달러가 현금이전이다. 1977~78년의 조세이전은 27억 달러 정도였으나 현재는 그의 8.3배에 달하고 있다.

4) 서정섭(2003)에 바탕을 두고 상기에 언급한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사용하여 update함.

다음 퀘백협정과 대체보조금(Alternative Payment)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퀘백협정에 따라 퀘백주에 대하여는 모든 주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13.5%의 조세이전 대신 16.5%를 적용하고 퀘백주의 소득세체계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이전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2008~09년도 퀘백주는 48억달러 이상의 조세이전을 받았다.

최초의 협약은 1960년에 연방정부가 퀘백주에 대해 연방대학교부금 대신 법인세율을 1%를 경감한 것이다. 법인세율 경감은 퀘백주가 연방프로그램에 채택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동일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이전하기로 함으로써 더욱 선호되었다. 동 특별조항은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에 대한 세액경감에 대한 일반조항으로 대체되었다.

1964년 16, 17세의 재학생이나 무능력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퀘백주는 이미 학생공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동 사업을 계속하길 원했으므로 연방정부는 퀘백 지역에 지역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개인소득세의 35%를 추가적으로 경감해 주었다. 연방 차원의 사업은 1974년 확대된 가족공제로 대체되었고, opting-out 협약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퀘백주 소득세율 구조의 완전한 개편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경감해 주었다.

3) 기타일반교부금⁵⁾

○ 안정화교부금(stabilization)

1957년 이래로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갑작스런 세입저하를 막아주기 위해 하였다. 1987년에 규정이 바뀌어, 전액 교부하던 방식에서 안정화교부금액수가 1인당 60달러를 넘는 부문에 대해서는 5년 무이자 융자금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안정화교부금에 따른 해당지역의 세입원을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1967년과 1990년 사이에 단지 두 번 사용되었지만 최근의 불황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지방이 안정화교부금의 교부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5~96회계연도부터는 동 교부금이 아주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사용되도록 교부금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 세입보장교부금(revenue stabilization)

1972년 연방정부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여 지방정부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와 재정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정부가 구법에 적용되었던 세율을 유지할 경우 5년 동안 1972년 연방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수의 감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였다. 즉, 지방정부 세입이 1971년의 세율을 계속

5) 박기백(1997), pp.150-153에서 발췌함.

적용했을 경우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보장되었다. 그러나 1975년에 연방법이 수정되어 ① 물가연동 또는 개인소득세의 지역별 변화에 따른 지방의 세수감소 ② 지방의 자연관련 세입(royalties)에 대한 연방세공제제도 폐지에 대해 연방이 보상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세입보전은 1972~77년 기간이 끝나면서 만료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EPF(Established Program Financing)공식이 수정되어 1972~77년 기간 동안 이전했던 자원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이전하도록 개정되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세입보전을 위한 교부금은 연방세법 변경시 이후 첫 회계연도의 지방세입 상실분으로 한정하고 또한 지방세입 상실분은 동 지역에서의 연방세의 1%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였다.

○ 연방 - 주정부간의 과세면제(reciprocal taxation)

1977년과 1983년에 협의된 상호과세협약은 1991년 1월 1일 발효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화 및 용역세(GST)의 입법으로 무효화되었다. 지방정부는 매입시 GST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방정부는 지방소매세가 면세된다. 종전의 협약을 대체하기 위해 3가지 새로운 협정이 협의되었다. 첫 번째,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가 상호간의 개별소비세(휘발유세, 담배세, 주세)를 지불하지만 GST 또는 소매세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행이나 숙박비와 같은 모든 간접적인 정부구매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된다. 뉴펀들랜드, 프린스에드워드섬, 노바스코셔, 퀘벡, 온타리오, 매니토바, 브리티시콜롬비아는 이 첫 번째 협정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는 어느 수준의 정부도 다른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스캐처원과 준주는 이 협정을 채택했다. 세 번째는 공식적인 협정이 없다. 뉴브런즈윅에서 각 수준의 정부는 다른 정부의 개별세를 부담한다. 뉴브런즈윅과 앨버타에서는 간접구매가 과세된다. 두 수준의 정부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세가지 유형에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협정하에 연방정부의 교부금은 없는 것이다.

○ 재산세 대체 교부금(grants in lieu of tax)

연방재산에 대한 재산세 대신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교부금 체계는 Municipal Grants Act에 설명되어 있다. 세금 대신 지급하는 교부금은 연방재산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계산한다. 즉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도시공원, 인디언 정착지, 운하, 활주로 같은 시설용으로 사용되는 연방재산에 대해서는 교부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또한 민간부문 거주자에 임대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대신해서 교부금을 지급한다. 일부 국영기업의 경우에도 교부금을 받는다.

○ 법정보조금(statutory subsidies)

연방정부는 현행 연방정부 - 지방정부간 재정협약과 EPF에 따른 교부금뿐 아니라 지방정부

에 특정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정부, 인구, 공채이자를 기준으로 한 경비와 특별교부금이 있다. 법정보조금은 다른 이전지출에 의해 대체되고 있으므로 그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2) 조건부 교부금⁶⁾

1) 개요

먼저 조건부 교부금에 대한 최근의 개혁 현황을 살펴보자. 헌법에 따라 보건, 교육, 사회복지 분야는 주정부의 관할이다. 그러나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해당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측면에서 취약하여 연방정부에 재정을 일부 의존한다. 연방정부도 연방차원의 정책을 주정부가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 방식도 변경되어 사회지원, 고등교육 및 보건 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교부되던 이전지출이 1996년부터는 캐나다 보건사회이전지출(CHST)로 통합되었다가 최근 다시 CHT와 CST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의 하위정부에 대한 이전지출이 1994~95 회계연도의 GDP 대비 5%에서 1997~98 회계연도에는 4%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방향은 CHT 및 CST 등을 삭감하는 대신 지방의 재정력 격차를 염두에 둔 재정균형 이전지출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지원규모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주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중앙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의 이전은 주로 CHT 및 CST와 재정균형 이전지출로 이루어져 있고, 연방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견성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와 주는 CHT 및 CST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다년도(5년)에 걸친 지출액을 확정하고 있다.

CHT 및 CST는 이전의 EPF와 캐나다지원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지방정부에 사회보장서비스, 교육시설 등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도입된 조건부 교부금이다.

지방의 자주성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담보장치로서 지방부담분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체의 이전액은 감소되었다. 1997년 이후 CHT 및 CST의 지역부담 비율은 1995년 이후의 인구변동을 감안하여 조정하게 되었다.

다음 현행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는 주 또는 準州정부와 공동으

6) 서정섭(2003)에 바탕을 두고 상기에 언급한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사용하여 update함.

로 운영하는 사업에 자금을 제공한다. 공동사업은 캐나다지원계획(CAP), 총세입보험계획, 이중언어교육 등을 포함한다.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과 표준에 따라 해당 사업들을 관리하며 연방정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조건부교부금은 1957년에 시작되었는데, 1960년대에 의료보험, 고등교육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과 같은 정책의 도입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후 지방정부가 보다 많은 재량권을 요구하고 연방정부도 지출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협정을 개정하였다. 1990년 2월 예산에서 연방정부는 캐나다 지원계획의 교부금 증가를 제한하였다. 온타리오, 앨버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대한 교부금은 1990~91년과 1991~92년에 최대 5% 증가로 제한되었고, 1991년 연방예산은 캐나다지원계획 교부금에 대한 동 제한을 1994~95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2007~08년도 예산부터는 조건부 교부금을 장기 지원 계획(long-term funding support)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그 지원 체계의 역할과 재정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조건부 교부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캐나다지원계획은 전체 특정교부금의 약 76%를 차지한다. 추가적으로 약 9억달러가 개인소득세율 5%를 경감하는 형식으로 퀘벡주에 제공된다. 1970년대 중반까지 연방정부는 주요 조건부 교부금 사업(의료보험, 고등교육)에 따른 지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증가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지방정부는 그들 자신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못하고 공동사업에 지출해야만 했다. 1977년에 맺어진 EPF협약은 바로 이러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였다. EPF 협약은 이후 몇차례 수정되었다. 의료보험과 고등교육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현금 및 조세이전은 2008~09년도 10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1997년 예산부터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의 재원이전프로그램인 캐나다지원계획 및 보건보험, 의료보험에 대한 지원계획인 EPF는 캐나다보건사회이전지출(CHST)로 대체되었다.

2) 캐나다 보건 및 사회 재정보조금(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 : CHT and CST)

캐나다는 1996년도부터 형평화교부금 이외의 재정이전을 캐나다보건사회이전으로 통합하였다가 최근 다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건강치유, 고등 교육, 사회지원 및 서비스, 어린이 교육 등과 관련한 현금 및 조세이전으로 이루어진다. CHT와 CST는 재정적 자율성을 위해 포괄보조금(block fund)의 성격을 가진다.

CHT 및 CST는 Established Programs Financing(EPF), 캐나다지원계획(Canada Assistance Plan, CAP)을 통합한 것이다. CAP는 1966년 정부간 비용분담(cost sharing)의 전제로 사회

부조사업(social assistance)에 조건부 보조금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EPF는 1977년 현금이전과 조세이전의 형태로 인구 1인당 기준으로 배분하는 포괄보조금 성격으로 도입하였다.

2007~08년도 보건재정이전(CHT)은 22억 달러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2013~14년도 까지 305억 달러로 연평균 6%씩 증액할 예정이며, 사회재정이전(CST)은 동년도 95억 달러서 2013~14년도 까지 122억 달러로 연평균 3%씩 증액할 예정이다.

(3) 準州 교부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 TFF)⁷⁾

재정균등화교부금 및 안정화 계획은 準주 노스웨스트, 유콘, 뉴나부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準州에 대하여는 별도로 일정한 공식에 따른 비조건부 성격의 準州교부금(TFF)이 교부되고 있다. TFF는 다른 주와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 準州의 지출수요와 수입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그 차이를 현금으로 이전해 주는 격차 보전(gap-filling)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TFF 배분 방식을 2007년도 예산부터는 '원칙에 기초한 프로그램(principles-based program)'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지출수요는 국가의 지출압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정부 총지출예산(Gross Expenditure Base)의 증감지수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성장율과 비교하여 각 準州 인구성장율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수입은 準州 수입능력을 평가하여 계산한다. 여기에 세수확보 노력과 북부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TFF는 북부지역의 병원, 학교,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콘과 노스웨스트 지역의 정부수입의 2/3를 차지하고, 뉴나부트 지역은 정부 수입의 3/4이상을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TFF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準州의 자립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근 TFF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준주 정부 수입 산정 공식을 단순화하고, TFF의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 그 추정과 지불 체계에 단순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TFF의 협정이 1999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07~08년도에 연방정부는 3개의 準州에 22억 달러를 교부하여 전년도보다 115백만 달러 증가하였다. 노스웨스트 지역에 788백만 달러, 뉴나부트에 893백만 달러, 유콘에 540백만달러를 교부하였다. 2008~09년도에는 이 3개 지역에 23억 달러를 증액 교부하였다.

7) 서정섭(2003)에 바탕을 두고 상기에 언급한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사용하여 update함.

2. 자치단체간 재정조정⁸⁾

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은 주정부의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정부 - 지방정부간 이전은 연방 - 주정부간의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이 두 수준의 이전은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연방 - 주정부간 이전의 30-35%가 일반교부금이고 나머지가 특정 교부금인데 반해, 주정부 - 지방정부 이전은 90%가 특정교부금이다.

시정부로의 일반교부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이전이며, 연방 및 주정부 기업이 재산세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연방 시정부교부금법은 세가지 기본 교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일반목적 및 교육목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대체 년별 교부금 ② 연방정부 소유의 과세대상 재산중 과세명부에서 제외된 경우의 일시적 교부금 ③ 지역개선을 위한 특별 평가 대신의 교부금이 있다.

재산세를 대체하는 연방교부금은 주정부의 경우와 동일하다.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의 특수목적 이전은 일반정부서비스, 공공사업, 상하수도, 그리고 연방재산에 제공되는 유사한 지역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을 포함한다. 일부 연방교부금은 직접 지방정부에 제공되는데, 이것은 주정부가 교부금의 중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이다. 보통 연방교부금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작업지원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다.

IV.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왔으며 그 제도도 다양하고 복잡다기하다. 그 제도는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를 두축으로 구성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양여금도로사업 보전분이 운영되고, 국고보조금제도는 일반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총액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법정화하여 재원총액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의 부족분 차액을 일정한 산식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중 분권교부세 0.94%와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 8,500억원을 제외한 금액과 전전년도 내국세 정산액을 포함한 교부세 총액의

8) 서정섭(2003)에서 발췌함.

9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 특별교부세는 나머지 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9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부동산교부세제도는 지방교부세제도의 틀내에 있으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바, 종부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을 보면 지방교부세제도는 일반보조금, 특정보조금, 포괄보조금의 유형이 혼합되어 있으며 특정보조금도 지방비를 매칭하는 경우와 매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고보조금제도는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 모두 지방비를 매칭하고 있다.

각 제도의 재원총액결정은 내국세 또는 특정세목 일정율, 특정부문 지원경비를 신축적으로 결정하며, 배분방식은 공식, 징세지원칙, 임의적 방식 등을 취하고 있다. 각 제도의 목적은 지역간 형평성과 특정기능 세출장려가 주목적이며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이 핵심이다. 또한 각 제도의 운영과정에 형평성지수를 대부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현 제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상황을 보완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배분방식의 합리성 결여이다. 현재의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은 과거에 비해 합리화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지역의 경제력 차이, 단위비용의 지역별 합리적 차등화, 지역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표준행정수요 산정방식의 합리성 결여이다. 표준행정수요 산정에 요구되는 회귀방정식의 적용대상단체의 선정과 그 과정에서 구해진 측정항목별 회귀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단체의 선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각 항목별로 특별한 논리를 제시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를 적당히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산정공식을 도출하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째 교부금의 배분공식에 지자체의 징세노력을 일부 연계시키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수확대에 따라 교부금이 감소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대 노력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 넷째 지방교부세를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균등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주요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재정형평화 기능보다는 지역기반시설의 구축이나 기초생활기반의 확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제도가 타 재정정책수단 및 공공부문계획과 유기적 연계가 결여된 상태로 각각의 상이한 기준, 배분방식, 대상사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국고보조금제도는 그 속성상 지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입장에 있어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국고보조금 지원을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정치적 타협과 관행에 의해 결정되어 합리적인 산출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식으로 이관되어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현행 제도는 과거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복보조, 보조규모의 영세성, 지출목적의 지나친 세분화, 부적합한 사업보조 등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보조금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⁹⁾.

V. 캐나다의 지방조정제도로부터의 시사점

캐나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그 것과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의 재원배분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연방제도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재정조정제도는 지역간 형평화 제고 및 재정자립의 제고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형평화교부금, 보건재정이전보조금, 사회재정이전보조금, 準州교부금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다. 재정균등화제도를 통한 지역간 수평적 형평성의 유지는 연방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연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중에 하나이며, 이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주도하에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제도가 자주 변하는 한국과 다르다.

셋째 형평화교부금은 평균적인 표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고 기본적으로 1인당 표준세입을 균등화하도록 재정능력으로 고려하여 균등화되도록 미달되는 지방정부에 보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 보통교부세와 동일한 기능을 하나 배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준주교부금

9) 본 장의 내용은 유태현·김현숙(2006), 서정섭·조기현(2007), 시·도지방공무원 교육원(2007) 등의 자료들을 참조함.

(TFF)은 열악한 환경 등으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북쪽 오지에 해당하는 준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으로 형평화교부금과는 별도로 특수 환경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보조금(CHAT)과 사회보조금(CST)은 현금이전과 조세이전으로 나누어 교부되고 있으며 조건부 보조금이지만 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보조금(block grant)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복지 지원 성격을 갖는 이 보조금이 다른 보조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총 이전보조금의 80% 가까이에 달하고 있다. 보건, 사회분야 복지보조금이 아직 작고 형평화보조금도 배분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우리나라의 보조금과 다르다. 이외 특정목적의 특정보조금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략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이전의 30-35%가 일반교부금이고 나머지가 특정조건부 교부금인데 대하여 주정부-지방정부 이전은 90%가 특정교부금이다.

넷째 2007~08년도 예산부터는 조건부 교부금을 장기 지원 계획(long-term funding support)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그 지원 체계의 역할과 재정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조건부 교부금이 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투명하게 지원하고 재정 책임성도 명확히 하는 점도 한국이 본 받아야 할 점이다.

참고문헌

- 권오성, 배인명, 김성철, 주운현, 2006,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보고서(12월), 한국행정연구원.
- 라휘문, 1997, 캐나다의 조세제도,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기백, 1997, 캐나다의 재정,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 서정섭, 2003, 캐나다의 지방조정제도,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정섭, 조기현, 200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연구원.
-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재정조정제도.
- 유태현, 김현숙, 2006,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8(2)
- 임성일, 2003,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상태에 대한 중앙·지방간 자원배분체제의 재구축, 한국지방재정논집.

- 최병호, 2007,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한국지방재정논집 12(1)
- Bahl, Roy and J. Linn, 1992, *Urban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vall, Daniel, Claire Charbit, Dirk-Jan Kraan and O. Merk, 2006,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decentralised public spending, *OECD Journal on Budgeting* 5(4), OECD.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Restoring Fiscal Balance for a Stronger Federation*, Budget 2007, March 19.
- Rosen, Harvey S. and Ted Grayer, 2008, *Public Finance*, 8th ed., McGraw-Hill.

A Study o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System in Canada

Kim, Seong-suhn*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recent developments and reforms in the system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system in Canada.

Canada has an extensive equalization scheme. A province gets an equalization transfer when its tax base per capita is lower than the standard tax base per capita. It can be restored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through grants. The Equalization formula will ensure that all provinces can provide reasonably comparable programs and services.

To compliment the local financ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gap between revenue sources of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by expanding the revenue sources of the local government. But there are lots of obstacles to improve the local finance. So the role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in Korea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opinion has an effect on operation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and contributes to present the way to improve the local allocation tax system and national subsidy system.

Key Words : Canada,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Grants.

* Professor of Economics,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